

##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금전제재 활성화 등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안 제349조, 제428조, 제449조)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중대한위반), 1천만원(경미한 위반)에서 각각 1억원, 3천만원으로 일괄 인상

과징금의 경우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하되, 동일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도 추가적으로 고려

(2)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 (안 제349조, 제446조, 제449조)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3)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근거 마련 (안 제422조)

임원 등에 대한 조치로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4)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422조의2)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5)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안 제424조)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6)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관련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안 제428조)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7)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근거마련 (안 제449조)

-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11.(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econokdh@korea.kr